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비율 의무화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72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비율 의무화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5. 7. 18.
3. 회 부 일: 2025.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 사업연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5%, 5%, 10%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 및 학교·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및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14.12.23.) 이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재원이었으며, 당시 사업별 배분비율은 공익사업적립금(현 체육·문화예술 진흥 사업) 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 주최단체 지원 10%였음.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14.12.23.)으로 동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될 당시,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편성권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사업 예산이 매년 법정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부터 매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고 기금운용의 여유자금의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 예산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3.4% 수준인 659억원만 편성되어 연평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수요 447건 중 42.8%에 불과한 190건만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의 '25년 예산도 각각 650억원, 1,545억원으로 수익금의 3.4%, 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비율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등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생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u>사용할 수 있다</u> .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 ----- <u>사용한다</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국민체육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②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③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이하 “법정 배분 비율 사업”이라 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¹⁾.

[법정 배분 비율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코드)	사용 목적	지원 비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163-309)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 개선 -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긴급히 개수·보수하여 안전한 체육활동 참여 여건 마련, 국민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기반조성 -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정률 지원	5%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사업명 (사업 코드)	사용 목적	지원 비율
주최단체 지원 (5261-317)	- (프로스포츠 활성화) 프로 리그/구단의 홍보 마케팅(5개 프로 리그 홍보, 65개 구단 홍보), 프로리그 경쟁력 향상 사업(중계·티켓·데이터 활용 고도화, 미래 발전 전력 수립) 등을 통한 프로스포츠 활성화 추진 -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주말리그 지원(초·중·고·대), 대회 및 연령별 국가대표 지원, 선수 및 심판 지도자 육성(우수 선수, 일반 학생, 아마추어) 등을 통한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저변 확대 도모 - (비발행대상종목 지원) 기초종목 육성, 소외종목 및 전략종목 저변확대, 동계종목 특별지원,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 등 추진 -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사업) 프로스포츠 공정성 제고 및 정책사업(현장영상 분석, 수준 향상 사업),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윤리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심판, 지도자, 은퇴선수지원, 에이전트, 인턴십 등), 국제교류 및 군경팀 지원, 2군리그 활성화 등	10%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5161-307)	- (학교체육 활성화) 대학운동부 육성지원, 대학스포츠 경쟁력 제고, 학생 선수권 학습권 보장 및 경기력 향상,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등 - (학교,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경기동영상 및 경기실적 시스템 개선, 학교·국군체육부대 등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에 대한 체계적 육성 지원 및 경기력 향상 지원 - (심판 양성 및 지원) 교육·평가, 심판활동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심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비장애인·장애인체육, 장애인 문화예술, 문학, 건축, 공예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 성장 지원 및 전문성 강화 - (문화예술취약분야 육성)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지역민의 시각예술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미술전시회 대한 접근성 제고, 실버세대와 독서 소외계층간 소통을 통한 일상속 책 읽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지원 - (체육·문화예술 진흥)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신인 예술가 발굴·육성,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지리정보 체계 서비스 등을 통한 기타 체육문화 예술의 진흥	5%

○ 그런데 동 재원의 여유자금 규모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배분 비율 사업의 실제 수요에 못 미치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정 배분 비율 사업이 편성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반

적으로 법정 배분 비율 편성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 기준 법정 배분 비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다면, 현 예산(2,854억) 대비 1,012억원(35%) 증액이 가능한 상황임.

[법정 배분 비율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단위 : 억원)	2015	2018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83 (4.3%)	647 (5.0%)	642 (4.3%)	656 (3.9%)	640 (3.3%)	659 (3.4%)	659 (3.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비발행 대상 단체·종목 지원	943 (9.4%)	1,278 (10.0%)	1,510 (10.0%)	1,464 (8.8%)	1,555 (8.1%)	1,297 (6.6%)	1,545 (8.0%)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472 (4.7%)	637 (5.0%)	755 (5.0%)	733 (4.4%)	715 (3.7%)	639 (3.3%)	650 (3.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지방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기금 여유자금 투입 등 국비 지원 방안 마련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관련 법령 개정 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2024년 11월 19일 채택한바 있음²⁾.
- 이상을 고려했을 때,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안전관리,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초·전략종목 육성 등 체육 분야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법정배분 비율에 따른 예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참고자료1]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참조

○ 법령에서 규정한 비율만큼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실제 사업수요와 무관하게 법정 배분 비율만큼의 예산을 관련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업수요가 배분된 예산보다 적은 경우 방만한 예산 운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유사 입법례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경우도 복권 수익금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대로 배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³⁾.

- 문화체육관광부는 방만한 사업 운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연장평가(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다양한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폐지·감축·미흡 등으로 결과가 나온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사업 폐지 및 예산 삭감 편성 등 환류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임.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보조사업 평가 체계 현황]

구분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육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근거	보조금법 제15조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문체부 훈령)
시행 주체	기재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기	3년	매년	매년
평가 등급	즉시·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우수(20%), 보통(65%), 미흡(15%)	우수(20%), 보통(65%), 미흡(15%)
환류	평가 다음 연도부터 평가결과 반영	미흡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10% 감축 편성, 3년 연속 미흡등급시 폐지	미흡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10% 감축 편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안전관리,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초·전략종목 육성 등 체육 분야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한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제안연월일 : 2024. 11. 19.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 문

정부는 지방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참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이양된 문화·예술 인프라 및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기금 여유자금 투입 등 국비 지원 방안을 고안하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정책 방향성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의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19년부터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었고, 지역 밀착형 국고보조사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건립,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등 문화시설 확충,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소관 12개 사업에 대하여 1단계 2019~2020년 기간 4,036억원, 2단계 2021~2023년 기간 4,779억원 등 5년간 총 8,815억원 규모를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 능력의 차이가 문화 향유 기회 격차로 이어져 실질적 문화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체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 전국 3,248개 문화기반시설 중 36.5%인, 1,185개 관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 지역에서는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문화 향유 및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각종 문화 인프라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민간 투자가 활발한 대도시와는 다르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향유 및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당초 지방이양의 취지와는 달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지역 불균형만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특히, 차질 없는 지방이양을 위해 추진된 한시적 국비 보전도 2026년에 종료되는 만큼, 미흡한 전환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임.

따라서 정부가 지방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참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이양된 문화·예술 인프라 및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기금 여유자금 투입 등 국비 지원 방안을 고안하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정책 방향성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의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참고자료2] 법정 배분 비율 사업 추진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5% / '25년 659억원, 127개소 지원)
 -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체육활동 및 경기관람 환경 마련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비발행 대상 단체·종목 지원(10% / '25년 1,545억원)
 - 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 지원(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 (프로스포츠) 프로리그·구단 홍보마케팅(5개 프로리그, 65개 구단), 중계·티켓·데이터 활용 고도화 등 프로리그 경쟁력 향상 사업 추진
 -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주말리그(초·중·고·대) 대회 및 연령별 국가대표 지원 등
 -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사업) 도핑, 승부조작 방지 등 공정성 제고, 은퇴선수·에이전트, 지도자 등 대상 교육 지원, 국제교류·군경팀 지원 등
 - ②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
 - (비발행대상 종목 지원) 기초종목, 소외종목 및 전략종목 육성지원 등
-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5% / '25년 650억원)
 -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운동부 창단, 스포츠클럽대회 지원 등을 통해 우수선수 에 대한 체계적 육성, 경기력 향상 지원 등 학교체육 저변 확산
 - (심판 등 전문인력 양성) 심판활동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산업·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
 -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및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법정 배분 비율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체육문화예술 사업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비발행 대상 단체·종목 지원
2015	438(4.3%)	472(4.7%)	943(9.4%)
2016	464(4.4%)	509(4.9%)	1,019(9.8%)
2017	1,073(9.6%)	553(4.9%)	1,107(10.0%)
2018	647(5.0%)	637(5.0%)	1,274(10.0%)
2019	692(5.0%)	702(5.0%)	1,384(10.0%)
2020	814(5.0%)	696(4.3%)	1,568(9.8%)
2021	642(4.3%)	755(5.0%)	1,510(10.0%)
2022	656(3.9%)	733(4.4%)	1,464(8.8%)
2023	640(3.3%)	715(3.7%)	1,555(8.1%)
2024	659(3.4%)	639(3.3%)	1,297(6.6%)
2025	659(3.4%)	650(3.4%)	1,545(8.0%)

[참고자료3] 체육진흥기금 관련 예산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최근 10년간 정부 재정, 문체부 예산 및 국민체육기금 편성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정부 예산 (증가율)	386.4	400.5 (3.6%)	428.8 (7.1%)	469.6 (9.5%)	512.3 (9.1%)	558.0 (8.9%)	607.7 (8.9%)	638.7 (5.1%)	656.6 (2.8%)	673.3 (2.5%)
문체부 예산 (증가율)	5.5	5.7 (3.6%)	5.3 (-7.0%)	5.9 (11.3%)	6.5 (10.2%)	6.9 (6.2%)	7.4 (7.2%)	6.7 (-9.5%)	7.0 (4.5%)	7.1 (1.4%)
체육기금 (증가율)	1.40	1.37 (-2.1%)	1.04 (-24.1%)	1.21 (16.3%)	1.43 (18.2%)	1.54 (7.7%)	1.72 (11.7%)	1.61 (-6.4%)	1.57 (-2.5%)	1.62 (3.2%)

※ 최근 3년간 체육진흥투표권 기금 전입 및 기금사업비 편성 현황

구분 (단위 : 억원)	2023년	2024년	2025년
체육기금 수입	33,244	32,208	29,774
체육진흥투표권 전입금	19,081	18,157	20,432
체육기금 사업비 (법정배분비율 사업비)	15,983 (2,910)	14,872 (2,595)	16,153 (2,854)